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 (행정안전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평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성과 중심의 효율적 조직·인력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업으로 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수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5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1. 31. ~ 2. 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개정령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전단 중 “1명(5급 1명)은 교육부, 1명(5급 1명)은”을 “1명(5급 1명)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삭제한다.

별표 1 중 총계 “166”을 “168”로 하고, 일반직 계 “163”을 “16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56”을 “158”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13조제1항 관련)

조직	정원
개인정보정책국 3개 과	11명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생략) ③ 위원회의 정원 중 <u>1명(5급 1명)</u> 은 교육부, 1명(5급 1명)은 보건복지부, 1명(5급 1명)은 금융위원회, 1명(경정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12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1명(5급 1명)</u> 은 ----- ----- ----- ----- -----. -----.
제14조(한시정원) ① <u>인공지능 관련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수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위원회에 두되, 별표 3의 정원 1명(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u>	제14조(한시정원)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공무원 정원표(제12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66</u>	<u>168</u>	+2
•	•	•	
•	•	•	
일반직 계	<u>163</u>	<u>165</u>	+2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56</u>	<u>158</u>	+2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	
연 락 처	(044) 205 - 2334